



노스 캐롤라이나 주
평가 위원회

의제: 고위 당국 결정 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N.C.GEN.STAT. §96-15 (e)에 의거하여, 이 사유는 _____ 일에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우편 발송 된 항소 심판의 (결정) (기각 명령)에 대한 항소 번호 _____ 인 **의 항소**를 고려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 앞에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항소 권한은 항소 결정의 _____ 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항소권은 _____ 일 (N.C. Gen. Stat. § 96-15(c2)에 의해 연장 된 추가 3 일을 포함하여) 에 만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고의) (고용주의) 항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상무부 고용 안전부 (노동부의 공공 고용 사무소) (섹션) (유닛)에 의해 _____ 일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원회는 항소가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립니다. 따라서 항소는 시기 적절하지 않았고 N.C. Gen.Stat. §§96-15(c) and (c2)에 명시된 적시성의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고) (고용주)는 04 N.C. Admin.Code 24A .0100 에 명시된 적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대해 04 N.C. Admin. Code 24A .0105(26) 에 정의된 좋은 사유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좋은 사유는 실사의 행위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 법적 변명이 되는 법적으로 충분한 이유여야 합니다. “실사”란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행하도록 기대되고 행해지는 조심성, 예방, 주의, 그리고 올바른 판단의 척도를 의미합니다. 04 N.C. Admin. Code 24A .0105(21). (원고) (고용주)는 늦은 항소를 허용한 좋은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원고의) (고용주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항소 심판의 (결정) (기각 명령)은 **최종적입니다.**

평가 위원회 위원 Keith A. Holliday 및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가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3 페이지 중 2



이.

평가 위원회

위원장

주의: 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팸플릿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팸플릿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항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의 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 캐롤라이나 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 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 (“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 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주의: 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위 당국 결정 번호.
3 페이지 중 3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



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 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 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서에서, 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